



제 418회 국회 (정 기 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관련 규정정비〉
■ 허종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147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관련 규정정비	2
※ 참고자료	9
1. 중소기업 실태조사 개요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허종식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8.
3. 회부연월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가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주기를 명시하고 있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경우에도 매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7조).

Ⅲ. 검토의견

1.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관련 규정정비

개정안은 현행법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¹⁾ 등을 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u>하하여야 한다.</u>	제7조(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① ----- ----- ----- ----- ----- <u>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⑤ 그 밖에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5조(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의 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
2.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의 인력활용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고도화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홍보를 위한 교육, 정보제공, 현장체험 등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공급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행법 제7조²⁾는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이러한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에 중소기업의 지역별·업종별·직종별 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제2항). 그 밖에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절차, 자료제출과 협조요청 근거에 관한 사항(제3항 및 제4항)을 규정함.

이와 같은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³⁾되고 있음.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지역별·업종별·직종별 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대학생 현장체험학습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 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활용 등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소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의 활동 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가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이 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실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행정부담 가중 및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함.

그런데 이 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는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의 시행 주기 및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의 시행 주기와 그 결과의 공표를 위한 법적 근거를 이 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러한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결과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적실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제1항⁴⁾은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할 때 이 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통합 실시의 실효성을 고려할 경우 중소기업 실태조사와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의 주기 등을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제1항을 근거로 중소기업 실태조사 시행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실태조사 중 이 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제1호)를 제외한 여성기업 실태조사(제2호),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제3호), 소상공인 실태조사(제4호)에 관하여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개별근거 법률에서 개정안과 같이 실태조사 시행 주기 및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유사입법례를 살펴보면, 실태조사 시행 주기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 다수의 입법례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

4)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

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실태조사 시행 주기를 2년 또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서는 실태조사 시행 주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실태조사 결과 공표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의 법률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한 반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표 1]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실태조사 규정 입법례

구 분	근거규정	주기	공표
중소기업 실태조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	매년	○
여성기업 실태조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매년	○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	매년	○
소상공인 실태조사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	매년	○
벤처기업 실태조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3	매년	○
창업기업 실태조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3조	매년	○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매년	○
도시형소공인 실태조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매년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실태조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2년	○
사업전환 실태조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2년/수시	X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매년	X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의2	매년	X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매년	X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8	3년	X
지역상권 실태조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X	X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X	X
벤처투자 실태조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X	X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X	X
스마트제조혁신 실태조사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X	X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7조제5항에 대하여는 현행법(제7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까지)에서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근거에 관한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어 추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할 사항이 많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실태조사의 방식(ex, 서면조사의 방법, 전자적 방식 등)이나 구체적인 결과 공표방법(ex,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 등)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 개선 실태조사의 시행 주기를 명확화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현재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공표하고 있어 실태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 6788-5463

【참고자료 1】 중소기업 실태조사 개요

□ (조사 목적) 중소기업의 활동 현황, 자금, 인력·경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과 구조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법적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 (중소기업 실태조사)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 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관련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주요 연혁) 제1회 중소기업 실태조사 실시 ('67), 지정통계 승인 ('99)

○ 조사대상: 22,000개사

* 시계열 항목: 17,000개사(제조업 8,000개, 서비스업 9,000개), 일반항목: 전 업종 5,000개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기준 업종별 매출액 5억원 초과 중소기업 (일부 서비스업종 3억원)

○ 조사기간(방법) : 매년 6~10월 (조사원을 통한 현장 방문조사)

○ 조사항목 : 121개

* 시계열 제조업 46개, 시계열 서비스업 30개, 일반항목 45개

구분		조사문항
시계열 항목	제조업	업체 정보, 일반실태(공장 현황, 원·부자재 구매, 설비투자·연구개발, 사업현황, 수위탁거래), 인력실태(직종별·재직연수별·연령별 등), 재무제표
	서비스업	업체 정보, 일반실태(사업 현황, 설비투자·연구개발, 사업실적), 인력실태, 재무제표
일반항목 (전 업종)		업체 정보, 인력활용(평균연봉 등), 중소기업 인식개선, 해외 진출, 사회적책임(CSR) 경영, ESG 경영, 사업전환

□ (공표) 매년 12월